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8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재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6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889,996원을 118,489,99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은 2011. 10. 31. A와 사이에, A가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는 신용보증기금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구상금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A는 2011. 10. 31. E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20. 9. 8.부터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E은행이 2020. 11. 4.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1. 3. 18. E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149,939,243원(= 원금 144,500,000원 + 이자 5,439,243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에 대한 구상금채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에 920,684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와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피고는 2020. 7. 24. A와 사이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7. 24. 접수 제802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A는 2021. 8. 1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하단1169호), 같은 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21. 10. 18.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2022. 2. 2. 부인의 소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359,999,999원에 매각되었고, 법원은 2022. 2. 2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5,76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7순위로 60,889,9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가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인정하여 배당된 57,6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889,996원은 118,489,99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가 파산신청 당시 작성한 ‘진술서’(갑 제16호증)에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을 폐업하였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2019년 9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A가 작성한 ‘채무초과 진술서’(갑 제17호증)에도 ‘2020년 3월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 A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피고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5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2016. 4.경부터 2017. 12.경까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A가 피고에게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2020. 4.경부터는 피고도 A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어는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6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889,996원을 118,489,99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범용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부산 해운대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층택지공 19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호 59.76㎡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대 14576㎡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4576분의 27.27

--- 이 상 ---

